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4. 2. 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2월 24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01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(2004. 2. 4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민원봉사과장 김 시 진

가. 제안이유

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의 마멸등으로 공인을 갱신한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(지방기록물관리기관)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·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에 폐기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보관하되, 서울특별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·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.(안 제9조)
-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

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)

○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, 재등록 또는 폐지한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,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02. 12. 2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멸 등으로 공인을 갱신한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(지방기록물관리기관)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.

<주요내용>

○ 현행규정에는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한 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던 것을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인대장에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,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(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)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10조제5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,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음.

<검토의견>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02. 12. 2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(안)은 2003년도 제2차정례회가 폐회된 후인 2003년 12월 24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본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개정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며, 동 조례(안) 제출당시 부칙에 2004. 1.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시행일은 소급적용해야 하므로

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윤남열 위원) : 조례 개정이 늦은 이유는?
- 답변요지(김시진 민원봉사과장) :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(안)요지 :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4. 2. 4 전완수 위원
- 나. 수정이유 : 동 개정조례(안)이 2003. 12. 24일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2004. 1. 1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규정이 문제는 없으나, 동 건이 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. 2.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됨으로 2004. 1.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규정을 수정코자 함.
- 다. 수정 주요골자
 - 부칙 중 “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 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”로 함.

7. 심사결과 : 수정(안)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4. 2. 4.
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(안)이 2003년 12월 24일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규정은 문제가 없었으나, 동 건이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2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부칙 중 “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- 부칙 중 “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 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	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12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의 마멸 등으로 공인을 갱신한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(지방기록물관리기관)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·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에 폐기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보관하되, 서울특별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·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.
(안 제9조)
- 나.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)
- 다.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,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함.
(안 제11조)

3. 근거법령

- 가. 사무관리규정(2002.12.26 대통령령 제17811호) 제39조 및 41조
- 나.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(2003.07.14 행정자치부령 제203호) 제57조 및 제58조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3.11.11 ~ 11.21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- 나.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2003. 12. 01
- 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,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·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1조본문 중 “공인(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)”를 “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”으로 하고,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민원봉사과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.</p> <p>③(생 략)</p> <p>제10조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~④(생 략) (신 설)</p> <p>제11조(공고) 구청장은 공인(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)을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(단서 신설)</p> <p>1.~4.(생 략)</p>	<p>제9조(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,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·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~④(현행과 같음)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공고)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	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